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게 정비 및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규정 삭제(안 제28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사업의 폐업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비비치의무가 폐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 삭제

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 정비(안 제29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20조제2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57632(2018. 10. 17.)〕
라. 규제심사 : 개선사항 없음〔기획감사실-8107(2018. 10. 15.)〕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생 략)	제16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생 략)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삭 제>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31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③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3항과 같음)